

[별표 1] <개정 2007.12.20>

과 세 물 품(제1조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1. 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나. 수렵용 총포류 (1) <삭제> (2)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을 제외한다)
2. <삭제>	
3. 법 제1조제2항제1호 다목 해당물품	가. 녹용 및 로얄제리(녹용 또는 로얄제리의 함유량이 전체 무게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나. 방향용 화장품 향수, 코롱, 분말향, 향낭
4.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해당물품	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 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품 (1) 보석 및 이를 사용한 제품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스 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퀴마린, 베릴, 투 어멀린, 지르콘, 크리스라이트, 가넷, 오팔, 비취 (연옥을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기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부라스톤, 헤마타이트 (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2)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 (가) 진 주 (나) 진주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3) 별갑(귀갑을 포함한다)·산호(흑산호를 제외한 다)·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가)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산호·호박 및 상아 (나) 별갑·산호·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깍연용구, 식탁용구 나.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을 제외한다) 장신용구, 화장용구, 깍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기타 이와 유사한 용품
5. 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 해당물품	가. 고급사진기(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적외선전용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인 것을 제외한다] (1) 고급사진기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나. 고급시계[스톱워치, 맵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의 것 및 워치무브먼트를 제외한다] 다.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라. 고급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한 카펫과 표면갈개인 섬유메트를 포함한다) 마.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6. 법 제1조제2항제3호 해당물품	승용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8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 이하이고 폭이 1.5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나. 지프형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7. 법 제1조제2항제4호 해당물품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 유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 등 유 라.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 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물이 몰백분을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24조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